

# 세무조정업무 수임계약서

위임자 (갑): 주식회사 아이피에스

수임자(을): 韓英會計法人

위 갑의 법인세신고를 위한 세무조정업무를 위하여 갑·을 양자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 97 조 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 산서 작성을 위한 세무조정업무의 수임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 (신의·성실) 을은 갑이 작성하여 제공한 재무제표, 장부, 기타 필요한 관계증빙서류를 근 거로 신의·성실하게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3 조 (세무조정대상 사업연도) 갑의 세무조정대상이 되는 사업년도는 제 <u>10</u> 기 <u>2005</u>년 <u>01</u>월 <u>01</u>일 부터 <u>2005</u>년 <u>12</u>월 <u>31</u>일 까지로 한다.

# 제 4 조 (업무협조와 자료제공)

- ① 갑은 을이 수행하는 세무조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을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세무조정업무에 필요한 인력, 재무제 표, 장부 및 기타 필요한 관계증빙서류를 을이 요구하는 기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조 (업무수행기간) 세무조정업무 수행기간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 6 조 (을의 업무범위)

- ① 을은 갑의 위임에 따라 갑이 하는 법인세신고를 위한 법인세법 제 60 조 제 2 항 제 2 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며, 그 이외의 서류작성이나 신고업무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국가에 제출하는 업무는 을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갑이 동의하고 전자신고를 요청한 경우 을은 갑을 대신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재무제표 등 서면자료 및 구두내용을 근거로 하여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며

갑이 을에게 관련자료를 누락시키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의 누락여부 및 자료의 적정성과 완전성에 관한 검토는 을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 7 조 (보수 및 출장비)

- ② 세무조정과정에서 통상의 세무조정 이외에 별도의 세무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무 자문비는 별도로 청구한다. 또한 상기 세무조정계산서와 관련하여 영문번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한다.

제 8 조 (보수지급방법) 갑은 음에게	보수총애구	우.
(₩)정을	계약체결사 [늄	워
(₩)정을 지급하고,	잔금	원(₩)정은
세무조정계산서 제출시 지급하기로 한다.		

제 9 조 (보수의 조정) 제 7 조의 보수 등은 세무조정업무수행기간 중에 을의 보수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된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 (세무조정계산서 제출) 을은 갑에게 세무조정계산서 \_\_\_\_\_부를 \_\_\_\_년 \_\_\_월 일까지 제출하며 이로써 을의 세무조정업무는 종료된다.

제 11 조 (비밀보장) 을은 세무조정업무상 지득한 갑의 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2 조 (업무수행 장소) 갑은 세무조정업무 수행 기간 중 을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	업무수행장소	:	`
			- )

#### 제 13조 (손해배상의 책임)

본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그 원인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 개월이내 또는 본 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5 년이내 중 먼저 도달한 일시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한다.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청구나 조치도 취할 수 없다.

# 제 14조 (책임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

- ① 갑이 을의 세무조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부정 및 정확하지 아니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기타 갑의 비협조로 인하여 정확한 세무조정계산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을은 그 사유를 갑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갑에 대한 세무조정계산서의 제출 의무를 면한다.
- ② 갑은 세무조정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갑은 세무조정 결과와 관련하여 을에게 어떠한 배상도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을은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라고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보수금액을 한도로 갑에게 배상한다.
- ③ 갑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받게될 경우에는 을에게 이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약에 따라 을의 지원을 받았어. 하다. 또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을이 이견이 있어 정당한 근거로서 세금등의부과처분에 불복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에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갑은 을이 갑을 대리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만약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

#### 제 15조 (계약의 해지)

- ① 갑과 을은 부득이한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 최소 1 주일전에 상대방 에게 사전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갑의 사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갑은 제 7 조에서 규정한 보수 및 해약일 까지 발생한 출장비 등 전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 ③ 을의 사정에 의하여 해지할 때에는 을은 기 수령한 보수 등을 전액 반환한다.
- ④ 제 14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을이 갑에게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 7 조에서 규정한 보수 등의 전액을 지급한다.

# 제 16 조 (분쟁의 해결)

- ① "갑"과 "을"간에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상관례에 따른다.
- ② 본 계약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동 분쟁의 소송 관할 "을"의 서울 소재 주된 사업 장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7 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갑 또는 을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 18조(상호합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19조 (계약의 세부조건) 본 계약의 세부조건은 붙임과 같다.

제 20 조(기타)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 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기 기명 날인하여 각 1 통씩 소지 보관하다.

년 월 일

위임자(弘) 京畿道平澤市芝制洞 33 주 소 (株) 아이 피에 스 상 호 代表理事張 鎬 承

수 임 자 (을)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5

상 호:한 영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 오 찬 석

# 계약의 세부조건

아래 세부조건은 <u>주식회사 아이피에스</u> 의 <u>2005</u>년 <u>12</u>월 <u>31</u>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업무 수임계약에 적용될 계약 내용에 관한 세부조건입니다.

# 1. 한영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법 제 23 조에 의해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이며 유한책임회사로 설립된 국제적인 회계법인인 Ernst & Young Global Limited("EYGL")와 제휴법인이며 EYGL 은 Ernst & Young International Limited("EYI")의 회원사이다. 이 부표에서 "우리"라는 의미는 경우 에 따라서는 Ernst & Young 율 원묘화다.

## 2. 수임료 및 청구

서면으로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의 수임료는 업무수임계약(이하 "계약"이라 칭함)이행에 필요한 소요 용역제공시간과 직급별 청구요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귀사와 합의된 보수는 세무조정업무수임계약서 제 7 조에 따른다. 수임료는 매년 검토 및 재조정된다. 수임료 청구시 계약기간 동안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발생비용액에 대해서도 청구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청구한다.

귀사와 합의한 우리의 수임료는 합의된 일정에 따라 귀사가 관련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고 업무수행을 하는 동안 귀사의 주요 임직원들이 필요한 협조를 충분히 한다는 전제 하에 결 정된 것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 귀사와 합의하여 수임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보수는 계약서에 정한 보수지급방법에 따라 업무의 진행정도에 따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3. 우리의 의무

우리는 세무조정업무수임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칭함)에 기술된 세무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인 수준의 지식과 주의를 하여 적시에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따라서 귀사의 요청에 따라 우리가 축약된 형태로 혹은 단축된 기한 내에 조언을 제공하게 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전부 제공받지 못 할 수가 있다.

우리는 귀사나 귀사의 대리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거나 조사하지 아니하며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귀사가 제공한 정보를 신뢰하고 그에 의존할 것이 다.

우리가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구체적인 자문내용이 다른 목적이나 다른 상황에 사용되는 경우 우리는 그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만일 귀사가 동 자문을 다른 거래나 다른 상황에 적용할 계획이라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모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가 그 목적에 맞추어 적절하게 조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일반적인 자문이 제공된 경우,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하여 동 자문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정황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특정거래나 정황과 관련 해서는 모든 중요한 정보를 항상 우리에게 제공하고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야 한다.

色加加

## 4. 전자 통신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는 인터넷 또는 기타 전자 매체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귀사와 서신 왕래를 할 수 있다. 인터넷 또는 유사 전자 매체를 통한 정보 전송에 따르는 내재된 위험 때문에, 우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송/수신되는 전자 정보 혹은 전자 통신의보안과 안전을 보증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이메일 서신왕래 및 기타 전자 정보를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로 검사해야 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전송된 정보가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보증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귀사의 건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우리의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하여 귀사의 사내 네트워크를 사용해 인터넷을 연결할 수도 있다.

또한, 한영회계법인은 전자통신의 보안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그 통신정보가 Ernst & Young 의 허가 없이 의도된 수신자 이외의 제 3 자에 의해서 입수, 열람, 수정, 변경 혹은 송수신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한영회계법인의 전자통신 정보에 대하여 허가 받지 않은 변경 또는 재송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귀사 혹은 제 3 자에게 발생한 어떤 손실, 손해, 비용, 혹은 청구에 대하여도 한영회계법인은 책임이 없다. 한영회계법인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한영회계법인이 보낸 전자 통신 정보에 대하여 어떤 수정, 변경, 추가, 삭제 혹은 재전송도 허용되지 않는다.

계약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영회계법인은 때때로 세계 곳곳의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관계사, 고문 혹은 제 3 자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귀사는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정보를 한영회계법인이 우편, 팩스, 전자통신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상기 관계사, 고문 혹은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귀사

는 승인한다.

## 5. 귀사의 의무

귀사는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충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귀사가 내리는 어떠한 상업적 결정도 우리의 업무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귀사는 동의한다. 또한 귀사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의 업무 범위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며 우리의 세무의견 이외에도 귀사와 귀사의 고문들이 파악한 혹은 파악해야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6. 정보 및 비밀보장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기밀 정보를 입수하는 경역, 우리는 본 계약의 해지 후에나 계약 기간동안 동 정보가 허가 없이 공개되거나 달라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적 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귀사가 우리의 고객이라는 사실은 비밀로 취급되지 않으며 우리는 귀사가 우리 고객이라는 사실을 당 법인의 고객 및 잠재고객에게 공개할 수 있다. 귀사와의 비밀보장의무를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우리는 귀사의 경쟁회사 혹은 그 밖의 고객을 위 하여 용역을 제공할 권리를 갖는다.

본 계약기간 동안 우리가 귀사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신, 정보 및 조언은 본 계약의 목적으로만 비밀리에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당 법인이 당해 용역 수행과정에서 제공하는 보고서, 서신, 정보 및 조언과 기타 제반 정보 및 자료는 우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제 3 자가 우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우리의 보고서, 서신, 정보 혹은 자문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우리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보고서나 기타 조언을 귀사에게 제공한 날 현재 본계약에 따라 귀사에게만 책임을 진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귀사나 우리 중 어느 편도 정보 유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가) 어떤 정보가 비밀보장 의무의 위반이 아닌 다른 이유로 대중이 알게 된 경우;
- 나) 공개에 대한 제한이 없는 다른 출처로부터 알려진 경우;혹은
- 다) 법적으로 혹은 전문가로서의/규제적 의무에 의해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 7. 지적 소유권

우리는 시스템, 방법, 소프트웨어, 노하우 및 조서를 포함하여 계약기간 동안 혹은 계약 이전에 우리가 개발하거나 디자인하거나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하여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귀사에게 제공한 모든 보고서, 서면 조언, 혹은 기타자료(우리가 세무조정을 한 경우 법인세신고서 포함)에 대하여 모든 저작권 및 지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단, 우리에게 수임료를 지급함으로써 귀사는 본 계약에 따라 이들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 8. 우리의 책임

우리는 결과적으로 발생된 손실, 간접적 손실 및 징계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귀사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귀사에게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우리는 EYI의 멤버나 EYGL의 다른 회원사 소속의 직원/파트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본 계약과 관련되어 그러한 파트너나 직원의 지원을 받는 경우 그들은 우리의 사용인이나 대한인으로 간주되며 다른 어떤 회사 (EYGL의 다른 멤버 혹은 EYI의 멤버 혹은 EYI자체)의 파트너, 사용인 혹은 대리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모든 면에서 우리의 파트너/직원인 것처럼 그들의 행동에 대해책임을 진다. EYI, EYI의 멤버 혹은 EYGL의 다른 멤버 중 어느 누구도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우리와 계약을 함에 있어서 귀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종류의 클레임도 그 대상이 한영회계법인이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실제로 우리의 사용인/대리인이든 간주사용인/대리인이든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여한 개인이 그러한 클레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귀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어느 관할권 지역에서든 EYI, EYI 의 멤버나 EYGL 의 다른 멤버 혹은 그에 소속된 파트너/직원을 상대로 하여 여하한 종류의 법적소송도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 9. 책임의 한도

한영회계법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귀사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라고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업무수임계약서 제 14 조 상에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한도로 배상한다.

### 10. 불가항력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의 범위를 벗어난 원인으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 귀사나 우리중 어느 편도 동 지연이나 불이행에 대하여 본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1. 계약의 해지

본 계약은 양자중 어느 일방이 적절한 파트너나 연락처로 표시된 상대 당사자의 연락 주소로 서면 통지한 날로부터 1 주일이 경과시 자동해지된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수등 정산은 세무조정업무수임계약서 제 14 조에 따른다.

### 12. 적용기간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조건의 적용은 본 계약서에 서술된 용역 제공이 개시된 시점에 시작된다.

### 13. 조건의 분리

업무수행 조건 중 어느 부분이 무효화 되어도 나머지 조건들은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 14. 계약서

본 계약서와 본 세부조건은 우리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와 합의한 내용전부를 구성하며 이전의 모든 합의, 제안서, 구두 및 서면 제시 및 협상에 우선한다.

# 15. 제목

본 업무수행 조건에 사용된 제목은 각 조건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6. 관할법 및 관할권

본 업무수행 조건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양 당사 자는 대한민국 법정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음에 동의한다.